

##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에 재직중인 지소장은 그 임기 만료일(근무상한기한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 조례 시행 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를 말한다)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 ~ 제4조 ( 생 략 )</p> <p>제5조 ①출장소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천지소, 장평지소, 도안지소를 둔다.</p> <p>②지소장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p> <p>③지소의 명칭, 위치,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제6조 ~ 제8조 ( 생 략 )</p>	<p>제1조 ~ 제4조 ( 현행과 같음 )</p> <p>제5조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②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③ ----- -----</p> <p>제6조 ~ 제8조 ( 현행과 같음 )</p>